

연번	문의처	질의	답변																																								
1	nayakss@	<p>심평원 홈페이지의 초음파 관련 Q&A에 보면</p> <p>1. 서로 인접된 부위에 초음파검사를 동시 시행한 경우에는 주된 초음파검사 소정점수의 100%, 제2의 초음파검사 50%를 산정하여 최대 150%까지 산정하며 산정횟수는 1회로 적용함.</p> <p>위와같은 경우 50% 검사에 대한 청구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50% 별도 산정코드가 없기 때문에 수량을 조정해서 들어가야 하는지 아니면 추후에 별도 산정코드를 내릴것인지등..입니다.</p>	<p>보험급여과-2306호('13.9.27)"초음파 급여화 관련 Q&A" 중 초음파 급여화 세부 적용기준 관련 사항 답변 9에 따라 다음의 예시와 같이 산정 및 청구 (예시) 동시에 경부초음파(주된 초음파검사)와 후두초음파(제2의 초음파검사)를 실시한 경우</p>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thead> <tr> <th colspan="10">진료내역</th> </tr> <tr> <th>종료번호</th> <th>항</th> <th>목</th> <th>코드 (분류)</th> <th>단가</th> <th>일투</th> <th>총투</th> <th>금액</th> <th>면허종류</th> <th>면허번호</th> </tr> </thead> <tbody> <tr> <td>0001</td> <td>09</td> <td>01</td> <td>E9416 (경부 초음파)</td> <td>30,570</td> <td>1</td> <td>1</td> <td>30,570</td> <td>1 (의사)</td> <td>12345</td> </tr> <tr> <td>0002</td> <td>09</td> <td>01</td> <td>E9417 (후두 초음파)</td> <td>18,820</td> <td>0.5</td> <td>1</td> <td>9410</td> <td>1 (의사)</td> <td>12345</td> </tr> </tbody> </table>	진료내역										종료번호	항	목	코드 (분류)	단가	일투	총투	금액	면허종류	면허번호	0001	09	01	E9416 (경부 초음파)	30,570	1	1	30,570	1 (의사)	12345	0002	09	01	E9417 (후두 초음파)	18,820	0.5	1	9410	1 (의사)	12345
진료내역																																											
종료번호	항	목	코드 (분류)	단가	일투	총투	금액	면허종류	면허번호																																		
0001	09	01	E9416 (경부 초음파)	30,570	1	1	30,570	1 (의사)	12345																																		
0002	09	01	E9417 (후두 초음파)	18,820	0.5	1	9410	1 (의사)	12345																																		
2	simsa5290@	<p>1. 산부인과 초음파 및 산부인과 질 초음파의 경우 골반장기로 산정 가능 한 것으로 질의 응답되어있는데 결과 입력 및 결과 확인위한 판독 결과지를 영상의학과와 동일하게 판독기록 하여야 하는지 산부인과 진료기록부에 초음파 영상과 결과만 산부인과 진료과장이 기록하기만 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p> <p>2. 또한 암수술 환자의 경우 수술 전 심장초음파는 진료의 결정에 따라 급여 가능하다고 응답을 받았으나 뇌혈관질환 수술 전 심초음파로 진료의 결정에 따라 급여 가능한지 심질환이 의심되어서라기 보다는 전신마취 전 검사로 하는 경우가 많으니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p>	<p>1. 해당 수가에는 판독료가 포함되어 있으며, 초음파 시행 후 결과에 대하여는 기록을 비치하여야 함.</p> <p>2. 등록 암환자가 해당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해당 상병 및 관련 합병증이 산정특례 대상에 해당되므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및 산정특례 관련 행정해석 (암등 중증질환 산정특례 관련 행정해석: 보험급여과-3680호, '05.8.26.)에 의거 산정특례 대상에 해당되는 진료시 시행한 초음파는 급여대상임.</p>																																								
3	sunnen0@	<p>문의드립니다. 급여되는 초음파코드를 보면 숫자로만 되어있는 코드가 있고 영문과 함께 있는 코드가 있습니다. 숫자로만 되어 있는 코드는 언제 사용? 산재, 보훈환자의 경우 숫자로만 되어 있는 코드 사용했는데.영문과 함께 있는 코드는 언제 사용? 산재, 보훈도 건보수가에 따라 간다고 하는데... 어떤 코드를 사용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주로 복부와 기타관절부위에 초음파 시행하는 곳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p>	<p>초음파급여화 관련 자료 조회 안내</p> <p>1. 초음파 수가 고시(제2013-129호) 홈페이지(www.hira.or.kr) > 기준법령 > 급여기준 > 행위 > 고시 > 번호 167번</p> <p>2. 초음파 세부기준 고시(제2013-144호) 홈페이지(www.hira.or.kr) > 기준법령 > 급여기준 > 행위 > 고시 > 번호 170번</p> <p>3. 중증질환 초음파검사 급여화 관련 행정해석(보험급여과-2306호) 홈페이지(www.hira.or.kr) > 기준법령 > 급여기준 > 행위 > 심사지침 > 번호 162번</p> <p>4. 초음파 수가코드 파일 홈페이지(www.hira.or.kr) > 기준법령 > 급여기준 > 청구관련기준자료 > 번호 979번</p>																																								

연번	문의처	질의	답변
4	jiongmei@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갈비뼈 골절을 초음파로 진단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이럴 때는 흉,복부에 해당하지는 않는것 같고 근골격에는 부위가 따라 나오지 않아 궁금하여 문의합니다. 코드번호와 수가가 어느것이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급여목록 외 진단목적, 치료 및 유도목적 등으로 실시한 경우는 비급여 대상에 포함됨.
5	ceci84@	수고많으십니다. 이번 초음파 급여적용관련해서 궁금한 사항 질문드립니다. 1)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저희 병원의 고시된 비급여 금액으로 청구를 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정책으로 인해 별도로 정해지는 수가가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본인 부담금은 어떻게 책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산정특례 환자분의 경우 10% 수납 적용을 하게 되는데 동일하게 적용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3)Q&A에 올려주신 초음파 종류외에 초음파도 산정가능한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신장투석 환자의 경우 fistula 초음파가 요구되는데 이 경우에도 급여적용이 되는지, 아니면 복부 초음파만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혈관 초음파가 급여적용이 된다면 금액은 어떻게 해야할지 알려주세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날씨 추워지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행복하세요~ 수고하세요~~	1) 초음파급여화 관련 자료 조회 안내 ①초음파 수가 고시(제2013-129호) 홈페이지(www.hira.or.kr) > 기준법령 > 급여기준 > 행위 > 고시 > 번호 167번 ② 초음파 세부기준 고시(제2013-144호) 홈페이지(www.hira.or.kr) > 기준법령 > 급여기준 > 행위 > 고시 > 번호 170번 ③중증질환 초음파검사 급여화 관련 행정해석(보험급여과-2306호) 홈페이지(www.hira.or.kr) > 기준법령 > 급여기준 > 행위 > 심사지침 > 번호 162번 ④ 초음파 수가코드 파일 홈페이지(www.hira.or.kr) > 기준법령 > 급여기준 > 청구관련기준자료 > 번호 979번 2)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고시에서 정한 중증질환 및 희귀난치성질환으로 등록된 환자는 등록일로부터 입원 또는 외래 진료 시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의 5(중증질환) 또는 100분의 10(희귀난치성질환)을 본인일부 부담토록 하고 있으므로 관련 기준 참조 3) 나-946 라. (1) 혈류 및 협착측정은 동정맥루 혈류 감시를 목적으로 동정맥루 협착여부를 관찰한 경우 산정함
6	유선	TCD(Transcranial doppler) 산정방법	보험급여가 적용되는 초음파검사는 '진단목적'으로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급여 적용이 가능하며, 급여목록 외 진단목적, 치료 및 유도목적 등으로 실시한 경우는 비급여 대상에 포함됨.
7	유선	IVUS(Intravascular ultrasound)산정방법	
8	유선	내시경초음파 산정방법	
9	유선	급여 진단목적 대상으로 분류되지 않은 spine, mandibule 등 bone에 대한 초음파 검사시 산정방법	
10	유선	진단목적으로 초음파 시행 중 병변을 발견하여 초음파 유도하에 생검을 한 경우는 진단목적인지, 유도목적인지?	유도목적으로 고시 제2000-73호에 의거 비급여임.
11	유선	경동맥 내막, 중막 두께 측정시 산정방법	나-941 가. 경동맥혈관초음파(E9411)에 포함되므로 동 검사료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12	유선	복부 초음파 산정기준	인접장기를 포함한 수가로 각 코드 행위에 해당되는 여러 부위를 동시에 검사하더라도 해당검사료의 소정 점수만 산정. 예)「간」만 검사 한 경우도 E9441 1회 산정 가능. 「간」,「담도」,「담낭」 등 다수의 장기를 검사한 경우도 E9441 1회 만 산정

연번	문의처	질의	답변
13	유선	항문초음파 산정방법	나-944 가(5) 직장초음파(E9445)에 해당되므로 동 수가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14	sonwk502@	1. 급여기준 중 초음파 검사시 진단목적으로 실시한 경우에 급여 적용이 가능하면, 치료 및 유도목적에는 비급여 대상에 포함됨 --- 매1년마다 2회 인정이라는 회수 기준하고 모순되는 기준이 아닌지요??	진단목적'이라고 함은 진료과정에서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경우 즉 추적검사 등은 포함하며, 초음파를 이용한 치료 및 시술 등의 치료목적 또는 특정 시술의 유도목적 등(예. 고강도 초음파 집속술[전립선암], 수술중 초음파 등)으로 실시한 경우는 제외됨을 의미함.
15	mjpark@	1. 급여대상 관련 일반사항 보험급여가 적용되는 초음파검사는 "진단목적"으로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급여 적용이 가능하며, 치료 및 유도목적 등으로 실시한 경우는 비급여 대상에 포함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희귀질환이나 중증질환대상자(등록 암환자 등) 가 급여대상자인데요,, 산정특례 등록된 기간등의 적용되는 기간등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미 등록된 기간이면 확진을 받은 이후인데,, 그러면 진단을 이미 받은 이후이기 때문에 " 진단목적" 의 의미가 혼동스럽습니다. 이미 확진받은 이후 치료전, 후등의 "치료목적" 이 급여대상자 아닌가요?? 공지한 " 진단목적" 의 내용이 이해가 안갑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단목적" 의 범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
16	sonwk502@	2. 희귀난치 질환 대상자가 관련없는 타질환으로 초음파 실시시, 보험급여 수가 대신, 기존에 산정하던 비보험 수가로 산정하는지요?	비급여 대상임.
17	spotgirls@	1. 임신부 초음파 관련입니다. 산정특례 질환과 그에 따른 합병증 진료를 볼때 초음파가 급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산부와 관련한 산정특례 질환을 딱 구분할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모든 질환은 임신에 영향을 끼칠수 밖에 없는데.. 중증질환자 및 희귀난치 질환자가(해당상병 모두 포함) 임신을 하였을 때 임산부 초음파를 급여를 해준다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산정회수도 궁금합니다. 중증질환자는 치료 전후라고 명시되어 있고 희귀 난치는 매1년 2회인데.. 해당질환으로 인하여 임신에 영향을 끼치거나 합병증이 생길가능성이 있다고 볼때 급여를 해준다는 것인지..	희귀난치성질환자 중 만성신부전증환자, 장기이식 환자의 경우는 투석 실시 당일 외래 진료 또는 이식술 후 조직이식거부반응억제제 등 약제를 투여 받은 당일 외래 진료의 경우와 동일날 타상병에 대한 진료도 산정특례에 해당되므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및 산정특례 관련 행정해석(희귀난치성질환 관련 행정해석: 보험급여과-3101호, '09.8.13.)에 의거 산정특례대상에 해당되는 진료시 시행한 초음파는 급여대상임.

연번	문의처	질의	답변
18	claraim67@	<p>척추경막외종양으로 종양제거술을 받은 환자가 이후 종양검사서 악성으로 판정을 받아 암등록을 해주었습니다.</p> <p>이런 경우 입원기간 전체를 암환자의 기준에 맞추어 본인부담율을 적용하게 되는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그러면 수술전에 촬영하는 심장초음파나 복부초음파는 - 문제가 있기보다는 혹시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촬영하는 경우, 검사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 상병이랑 관련이 없으니 비급여 대상인가요? 2. 아니면 종양제거술을 위해 수술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하는 검사이니 급여대상이 되는 건가요? 3. 급여 대상이 된다면 한개는 급여로 찍고 나머지 하나는 본인부담으로 촬영을 해야 하는 건가요? 	<p>등록 암환자가 해당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해당 상병 및 관련 합병증이 산정특례에 해당되므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및 산정특례 관련 행정해석(암등 중증질환 산정특례 관련 행정해석: 보험급여과-3680호, '05.8.26.)에 의거 산정특례대상에 해당되는 진료시 시행한 초음파는 급여대상임.</p>
19	kjjou1004@	<p>1.v191,뇌혈관 질환, v192심장 질환자가 뇌혈관 또는 심장질환과 관련 없는 (예를 들면, 복부 초음파 등) 초음파를 산정특례 적용기간 중(최대30일)에 시행할 경우 요양 급여에 해당하는지, 또한, 해당하지 않는다면 비급여인지 또는 전액 본인부담인지가 궁금합니다.</p> <p>2.v192심장 질환자가 산정특례 적용기간(최대 30일) 중 3회 이내 인정한다고 하였는데 부위가 다른 (예를 들면, 심초음파, 사지관절 초음파등) 초음파를 시행한다면 각각 부위별로 3회인지, 부위를 불문하고 총 3회인지가 궁금합니다.</p>	<p>뇌혈관질환자, 심장질환자가 입원하여 해당 상병의 치료를 위해 해당 수술(시술)을 받은 경우 해당상병 및 관련 합병증이 산정특례에 해당되므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및 산정특례 관련 행정해석(암등 중증질환 산정특례 관련 행정해석: 보험급여과-3680호, '05.8.26.)을 참조하여 산정특례대상에 해당되는 진료시 시행한 초음파는 급여대상임.</p> <p>이때 인정횟수는 부위별 3회가 아닌 산정특례 적용기간중 3회를 의미함.</p>
20	kyung2721@	<p>안녕하십니까? 초음파관련 문의드립니다 위암등록된 환자의 전이여부를 보기위해 복부초음파를 시행한 경우 급여의 대상인지 궁금합니다.</p> <p>유선상으로 문의를 드리니 재발 전이가 있을 경우 치료 전1회, 치료후1회라고 답변주셨는데 전이가 발견되지 않더라도 전이유무를 따지기 위해 시행한 초음파일 경우 급여대상인지가 궁금합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p>	<p>등록암환자의 경우 치료전, 후 각 1회, 이후 추적검사는 매1년마다 2회 보험급여가 가능하며, 결과 여부에 따라 보험급여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님.</p>

연번	문의처	질의	답변
21	juna102@	<p>암환자,뇌혈관질환자,심장질환자,희귀난치성질환자,산정특례자에 대해 급여가 널 부터 한다고 되어있는데요...</p> <p>산모가 보험유형이 그럼 무조건 산모초음파를 보험해주는건지요? 아님...5가지보험유형중 해당사항이 있으면서 관련질환자에게만 급여가 되는지요...??</p> <p>사실...임산부,산모초음파인 경우 자궁암도,갑상선암도...모든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실질적인 초음파 급여 환자가 없다는 얘기죠...제가 잘못 이해한거 아니죠? 제가 이해가 기준이 맞는거죠?</p>	<p>희귀난치성질환자 중 만성신부전증환자, 장기이식 환자의 경우는 투석 실시 당일 외래 진료 또는 이식술 후 조직이식거부반응억제제 등 약제를 투여 받은 당일 외래 진료의 경우와 동일날 타상병에 대한 진료도 산정특례에 해당되므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및 산정특례 관련 행정해석(희귀난치성질환 관련 행정해석: 보험급여과-3101호, '09.8.13.)에 의거 산정특례대상에 해당되는 진료시 시행한 초음파는 급여대상임.</p>
22	04-sjdprp@	<p>CRF로 투석 받는 환자로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되어 있는 환자가 동정맥루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E9466, 수술을 받기 전 E9467을 시행하는 경우 급여에 해당이 되나요??</p>	<p>상동</p>
23		<p>3. 장기이식환자가 면역억제제를 투여 받은 외래 방문 날짜에 복부초음파와 경부 초음파(이전 lymph node +)촬영하는 경우의 급여 여부</p>	<p>상동</p>
24	twin0716@	<p>라.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대상으로 등록된 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V001~)</p> <p>(1) 매1년마다 2회 (2) 다만, 장기이식 환자의 경우(V005, V013, V014, V015)에는 장기 이식 수술 시 2회 추가 인정 => 위의 문구에 의해 v 코드를 가진 환자 특히 정신질환자도 초음파 인정이 되나요</p>	<p>희귀난치성질환으로 등록된 환자가 해당 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해당 상병 및 관련 합병증이 산정특례에 해당되므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및 산정특례 관련 행정해석(희귀난치성질환 관련 행정해석: 보험급여과-3101호, '09.8.13.)에 의거 산정특례대상에 해당되는 진료시 시행한 초음파는 급여대상임.</p>
25	huiya7878@	<p>뇌혈관질환이나 심장질환, 등록 희귀난치성 질환에서 수술 시 수술을 위한 초음파(예를 들어 복부나 심장 초음파)검사시에도 초음파가 인정되는지, 인정된다면 인정 횟수는요? 인정횟수가 있다면 인정횟수 이외의 진료분은 비급여가 가능한지요..</p>	<p>뇌혈관질환자, 심장질환자가 입원하여 해당 상병의 치료를 위해 해당 수술(시술)을 받은 경우 해당상병 및 관련 합병증이 산정특례에 해당되므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및 산정특례 관련 행정해석(암등 중증질환 산정특례 관련 행정해석: 보험급여과-3680호, '05.8.26.)을 참조하여 산정특례대상에 해당되는 진료시 시행한 초음파는 급여대상임.</p> <p>희귀난치성질환으로 등록된 환자가 해당 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해당 상병 및 관련 합병증이 급여대상에 해당되므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및 산정특례 관련 행정해석(희귀난치성질환 관련 행정해석: 보험급여과-3101호, '09.8.13.)에 의거 산정특례대상에 해당되는 진료시 시행한 초음파는 급여대상임.</p>

연번	문의처	질의	답변
26	jbs1214@	유방암환자중에 유방 초음파를 처방하여 유방을 보다가 림프전이가 많기 때문에 neck Lymph 쪽을 보고 있습니다. 전이는 없지만 유방 초음파를 시행할 때 neck USG 시행할 경우 비급여로 해야 하는지요?? 등록암과 관련된 경우와 합병증일경우만 급여 인거로 알고 있는데.. 항암치료 및 치료 예후를 결정하기 위해 시행할 경우 NECK USG 비급여로 처방 가능한 지가 알고 싶습니다.	등록 암환자가 해당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해당 상병 및 관련 합병증 이 산정특례에 해당되므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및 산정특례 관련 행정해석(암등 중증질환 산정특례 관련 행정해석: 보험급여과-3680호, '05.8.26.)에 의거 산정특례대상에 해당되는 진료시 시행한 초음파는 급여대상임.
27	lms4710790@	1. CRF로 산정특례대상중 V001 인공투석 당일 외래진료분에 해당되는경우 당일 타과에서 시행한 초음파는 급여대상에 포함되나요? 횡수초과시 본인부담 100%로 산정하면 되는지요? 2. 산정특례 대상 환자가 임신했을경우 해당질환으로 인한 임신또는 태아의 합병증을 주치의가 판단한경우 나 947 산모초음파, 태아정밀 초음파가 급여가 되나요?	희귀난치성질환자 중 만성신부전증환자, 장기이식 환자의 경우는 투석 실시 당일 외래 진료 또는 이식술 후 조직이식거부반응억제제 등 약제를 투여 받은 당일 외래 진료의 경우와 동일날 타상병에 대한 진료도 산정특례에 해당되므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및 산정특례 관련 행정해석(희귀난치성질환 관련 행정해석: 보험급여과-3101호, '09.8.13.)에 의거 산정특례대상에 해당되는 진료시 시행한 초음파는 급여대상임.
28	tlghkh@	산정특례환자의 수술시 특례질환과 상이하나 수술전 마취 관련 위험성을 판단하기위하여 2D echo 시 급여 가능한지요? (예를들면 위암환자 수술전 위험성을 예방하기위하여 2D echo 진행)	등록 암환자가 해당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해당 상병 및 관련 합병증 이 산정특례에 해당되므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및 산정특례 관련 행정해석(암등 중증질환 산정특례 관련 행정해석: 보험급여과-3680호, '05.8.26.)에 의거 산정특례대상에 해당되는 진료시 시행한 초음파는 급여대상임.
29	hs6139@	암환자가 수술을 위해 수술전 심장초음파를 촬영할 경우, 전체적 진료내역은 중증암등록으로 청구하지만 암과 관련여부가 없는 심장초음파는 비급여대상 인가요?	상동
30	lms4710790@	3. 급여대상 관련 합병증이라는 부분은 주치의 판단이 우선인가요? 검사결과가 정상이라도 급여로 가면 되는지요?	상동
31	sonwk502@	3. 초음파 급여 대상자가 급여기준 횡수 초과시 건강보험 수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비급여로 산정해야 하는지요?	초음파검사 급여대상이나 산정횡수를 초과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의 소정점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액본인부담하여야 함.

연번	문의처	질의	답변
32	spotgirls@	<p>2. 암환자 '치료' 의 의미와 선정횟수 ex) 간암 환자가 항암,방사선,수술치료 등이 아닌... 말기암환자 같은 경우나 pain control 같은 목적으로 입원시 경구 및 주사제 투여 등만 이루어진 경우.. 초음파는 치료 전, 후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 입원하여 약제만 투여하는 환자가 복수때문에 초음파 시행하고 복수천자 후에 다시 초음파를 한다면 치료전후 각 1회씩 인가요? 복수천자를 하지 않고 단지 약제만 계속 투여하다가 초음파를 다시 f/u 한다면? - 아니면 그냥 쉽게 암환자가 입원하여 해당질환 및 합병증으로 초음파를 촬영할때 입원기간동안 총 2회를 주고 2회중 마지막 촬영 부터 1년을 count 하여 2회를 더 산정할 수 있는 건가요? ex) 1월 1일 ~1월 31일 입원하여 총 2회(1월 1일 1회 촬영, 1월 31일 1회 촬영) 그 2월 1일 ~다음 해 1월 31일 동안 2회를 더 산정 할 수 있는건지..</p>	<p>암환자의 경우 통상적으로 "치료"는 항암치료, 방사선치료, 수술 치료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말기암환자의 경우는 경과 관찰을 하면서 추적검사를 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매1년마다 2회범위내에서 급여하고 산정횟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액본인부담함.</p>
33	sonwk502@	<p>4. 선택진료의사가 실시시 선택진료비용을 추가로 산정할 수 있는지요?</p>	<p>선택진료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 제61호)제5조 제3항 관련 [별표]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의 항목과 추가비용의 산정기준"에 의거 산정이 가능함.</p>
34	swmomz@	<p>초음파 급여적용이 암등록 환자인 경우 치료 전,후로 총 2회 급여 적용으로 알고 있는데요 타 병원 보험적용 내역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예를 들어 암환자가 입원시 전 병원에서 몇 번 시행, 급여 적용을 했는지 판단하여 급여나 전액부담으로 산정해야 할텐데 이력을 알 수 없는 경우 타 병원에서 산정 기준이 애매해서요. 만약 이력이 파악이 안되어 A병원에서 2회 급여 청구, B병원에서 1번 청구 되었을 경우 B병원 초음파가 삭감되는지요. 방법 좀 알려주세요~~~</p>	<p>산정횟수는 원칙적으로 산정특례대상자에 따른 기준으로 적용하지만 불가피한 현실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일부는 요양기관별로 초음파검사 세부인정기준에 따라 인정함.</p>
35		<p>1. Thyroid ca환자가 외래에서 f/U로 검사할 경우 경부 초음파 와 유방 초음파 (전이여부확인위해)를 동일날에 촬영하는 경우의 급여 여부</p>	<p>1. 경부초음파와 유방초음파를 각각 산정하되, 산정횟수에 포함됨 (2회로 적용)</p>
36		<p>2. 추적 검사 관련하여 1년에 2회라고 하면은 2013.10.01~2013.12.31, 2014.01.01~2014.12.31을 의미하는 것인지, 각개인의 환자로 봤을 때 첫 시행일로 부터의 1년인지</p>	<p>2. 추적검사는 MRI 등과 마찬가지로 환자별로 추적검사 시 매1년으로 기산함.</p>

연번	문의처	질의	답변
37	joskdg@	<p>갑상선 초음파를 실시할때 외래에서 진료 과장이 간단하게 보는 경우에도 산정특례의 경우 요양급여기준에 해당하면 산정할수 있는가요?</p> <p>영상의학과 의사가 직접 시행해야만 산정 할수 있는가요?</p>	<p>등록 암환자가 해당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해당 상병 및 관련 합병증이 산정특례에 해당되므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및 산정특례 관련 행정해석(암등 중증질환 산정특례 관련 행정해석: 보험급여과-3680호, '05.8.26.)에 의거 산정특례대상에 해당되는 진료시 시행한 초음파는 급여대상임.</p> <p>뇌혈관질환자가 입원하여 해당 상병의 치료를 위해 해당 수술(시술)을 받은 경우 해당 상병 및 관련 합병증이 산정특례에 해당되므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및 산정특례 관련 행정해석(암등 중증질환 산정특례 관련 행정해석: 보험급여과-3680호, '05.8.26.)을 참조하여 산정특례대상에 해당되는 진료시 시행한 초음파는 급여대상임.</p> <p>희귀난치성질환으로 등록된 환자가 해당 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해당 상병 및 관련 합병증이 산정특례에 해당되므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및 산정특례 관련 행정해석(희귀난치성질환 관련 행정해석: 보험급여과-3101호, '09.8.13.)에 의거 산정특례대상에 해당되는 진료시 시행한 초음파는 급여대상임.</p>
38	joskdg@	초음파의 경우 판독료는 산정 할 수 없는 건가요? 반드시 판독이 되어 있어야 하는 건가요?	해당 수가에는 판독료가 포함되어 있으며, 초음파 시행 후 결과에 대하여는 기록을 비치하여야 함.
39	midal3741@	<p>희귀난치성 환자가 정상임신을 해서 초음파를 분만 40주 동안 정기적으로 보게 되면 보험됩니까?</p> <p>관련질환만 된다고 알고 있는데 산모 초음파가 너무 디테일하게 나와있어서 헷갈리네요</p>	희귀난치성질환자 중 만성신부전증환자, 장기이식 환자의 경우는 투석 실시 당일 외래 진료 또는 이식술 후 조직이식거부반응억제제 등 약제를 투여 받은 당일 외래 진료의 경우와 동일날 타상병에 대한 진료도 산정특례에 해당되므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및 산정특례 관련 행정해석(희귀난치성질환 관련 행정해석: 보험급여과-3101호, '09.8.13.)에 의거 산정특례대상에 해당되는 진료시 시행한 초음파는 급여대상임.
40	sunnen0@	<p>문의드립니다.</p> <p>'4대 중증질환자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외에는 초음파 모두 비급여 대상인지 궁금합니다.</p> <p>그리고 초음파검사는 진단목적 외에는 모두 비급여대상 인지도 궁금합니다.저희는 복부, 기타관절부위에 주로 초음파하는 병원입니다.</p> <p>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p>	<p>초음파검사는 급여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비급여대상임.</p> <p>'진단목적'이라고 함은 진료과정에서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경우 즉 추적검사 등은 포함하며, 초음파를 이용한 치료 및 시술 등의 치료목적 또는 특정 시술의 유도목적 등(예. 고강도 초음파 집속술[전립선암], 수술중 초음파 등)으로 실시한 경우는 제외됨을 의미함.</p>

연번	문의처	질의	답변
41	dmsal5092@	<p>1. 보험급여가 적용되는 초음파검사는 '진단목적'으로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급여 적용이 가능. => 예) 초음파검사에서 암으로 진단된 경우에 적용되는지?(이경우는 아직 공단에 등록되지 않음)</p> <p>2. 횡수는 어떻게 확인 할수 있는지?(타병원 중복)</p>	<p>1. '진단목적'이라고 함은 진료과정에서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경우 즉 추적검사 등은 포함하며, 초음파를 이용한 치료 및 시술 등의 치료목적 또는 특정 시술의 유도목적 등(예. 고강도 초음파 집속술[전립선암], 수술중 초음파 등)으로 실시한 경우는 제외됨을 의미함.</p> <p>2. 산정횡수는 원칙적으로 산정특례대상자에 따른 기준으로 적용하지만 불가피한 현실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일부는 요양기관별로 초음파검사 세부인정기준에 따라 인정함.</p>